

【 11 】 양주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제출년월일 2002. 7. 5
제 출 자 양 주 군 수

1. 개정이유

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개정(2001.1.13)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인용조문중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을 장사등에관한법률로 개정함
(안 제1조 · 제4조 · 제17조)
- 나. 허가를 신고로 개정함(안 제4조 · 제5조)
- 다. 묘지의 설치면적을 개정함(안 제7조)

양주군조례 제 호

양주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제1조(목적) 중 “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7조”를 “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”로 한다.

제3조(명칭과 위치) 중 “별표”를 “별표1”로 한다.

제4조의(사용허가) 제목중 “사용허가”를 “사용신고”로하고 제1항중 “군수의 허가를 받아야”를 “군수에게 신고 하여야”로 하며 제2항을 삭제한다.

제5조의(사용허가의 취소) 제목중 “사용허가의 취소”를 “사용의 금지 명령등”으로 하고 본문중 “사용허가를 받은 자”를 “사용신고를 한 자”로하며 “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”를 “묘지의 사용금지 또는”으로 하고 제1호중 “사용허가를 받은”을 “사용신고를 한”으로 한다.

제7조(묘지의 면적제한) 중 “일반묘지는 9.9제곱미터, 공원묘지는 6.6제곱미터로”를 “일반묘지는 1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아야”로 한다.

제8조(분묘의 설치등) 제1항중 “공원묘지”를 “일반묘지”로 하고, “사망자와 가족의 성명”을 “사망자의 성명”으로 한다.

제10조(사용료 및 수수료) 제1항중 “묘지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”를 “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”로 하고, “별표2”를 “별지”와 같이 한다.

제17조(준용) 중 “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”을 “장사등에관한법률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2]

일반묘지 사용료 및 관리료

기준 면적 (m ²)	기본금액(원)			관외거주자 가산금액	비고
	계	사용료	관리료		
10	35,000	26,000	9,000	50%	

신·구조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</u>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군 공설묘지(이하 "묘지"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<u>장사 등에 관한 법률</u> 제12조----- ----- ----- -----
제3조(명칭과 위치) 묘지의 명칭과 위치는 <u>별표</u> 와 같다.	제3조(명칭과 위치) ----- --- <u>별표 1</u> -----
제4조(사용허가) ①묘지안에서 시체를 매장 또는 개장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②전향의 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가 지정한 장소를 묘지로 사용하여야 한다.	제4조(사용신고) ①----- ----- <u>군수에게</u> <u>신고하여야</u> --- (삭제)
제5조(사용허가의 취소) 묘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. 1. 사용허가를 받은 묘지를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하였을 때 2 ~ 5 (생 략)	제5조(사용의 금지명령 등) ----- <u>사용</u> <u>신고를 한 자</u> ----- ----- <u>묘지 사용</u> <u>금지 또는</u> ----- 1. <u>사용신고를 한</u> ----- ----- 2 ~ 5 (현행과 같음)
제7조(묘지의 면적제한) 분묘의 1기당 점유면적은 일반묘지는 9.9제곱미터, 공동묘지는 6.6제곱미터로 한다. 다만, 군	제7조(묘지의 면적제한) ----- ----- <u>일반묘지는 1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아야</u> -----

현 행	개 정 안
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적 을 초과할 수 있다.	----- -----
제8조(분묘의 설치등) ①공원묘지 안에서 의 분묘는 군수가 지정한 형태와 구조 로 설치하여야 하며 반드시 <u>사망자와</u> <u>가족의 성명</u> 을 표시한 비석을 세워야 한다. ② ~ ③(생략)	제8조(분묘의 설치등) ①일반묘지 ----- ----- ----- <u>사망자의 성명</u> ----- ----- ----- ② ~ ③(현행과 같음)
제10조(사용료 및 수수료) ①묘지의 사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<u>별표 2</u> 에 의 한 사용료 및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한 다. ② ~ ③(생략)	제10조(사용료 및 수수료) ①묘지를 사용 하고자 하는 자----- ----- -- ② ~ ③(현행과 같음)
제17조(준용) 매장 및 개장에 관하여 이 조례가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<u>매장 및</u> <u>묘지 등에 관한 법률</u> 을 적용한다	제17조(준용) ----- ----- <u>장사 등</u> <u>에 관한 법률</u> -----

제7편 사회복지 양주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

(별표 1)

일 반 묘 지

명 칭	위 치	명 칭	위 치
회천묘지	회천읍 봉양리 " 화정리 " 옥정리	남면묘지	남면 입암리 " 경신리 " 매곡리
양주묘지	양주읍 삼승리 " 미전리 " 어둔리 " 유양리 " 광사리		" 구암리 " 신산리 " 황방리 " 상수리 " 한산리
백석묘지	백석읍 방성리 " 흥죽리 " 복지리 " 비암리	광적묘지	광적면 광석리 " 우고리 " 가납리 " 석우리
온현묘지	온현면 선암리 " 용암리 " 도하리 " 하패리	장흥묘지	장흥면 삼상리 " 삼하리

제7편 사회복지 양주군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

(별표 2)

공원묘지 사용료 및 관리료

기준	허가신청서 납부금액			사용료 부 담 액				
	평수	계	사용료	관리료	계	매장료	비석대	잔디료
m ²	원							
6.6	31,700	15,400	16,300		※ 시행규칙 제4호에 의한다.			

일반묘지 사용료 및 관리료

기준면적	기본금액(원)			9.9m ²	관외거주자	비고
	계	사용료	관리료			
9.9m ²	35,000	26,000	9,000	3.3m ² 당 10,000원	50%	

第36編 保健·醫事 第2章 保健 葬事등에 관한法律

②市長·郡守·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無緣故 尸體 등을 처리한 때에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.

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埋葬 또는 納骨의 기간과 당해 기간이 종료한 후의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.

第3章 墓地·火葬場·納骨施設

第12條 (公設墓地 등의 設置) ①市·道知事 및 市長·郡守·區廳長은 公設墓地·公設火葬場 및 公設納骨施設을 設置·관리하여야 한다.

②市·道知事 또는 市長·郡守·區廳長은 地域 特性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設墓地·公設火葬場 및 公設納骨施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市·道知事 또는 市長·郡守·區廳長과 공동으로 設置·관리할 수 있다.

③공설묘지·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02·1·19>

第13條 (私設墓地의 設置 등) ①國家·市·道知事 또는 市長·郡守·區廳長이 아닌 者는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른 墓地(이하 “私設墓地”라 한다)를 設置·관리 할 수 있다.

1.個人墓地: 1基의 墓를 또는 당해 墓에 埋葬된 者와 配偶者關係에 있던 者의 墓를 동일한 區域안에 設置하는 墓地

2.家族墓地: 民法상 親族關係에 있던 者의 墓를 동일한 區域안에 設置하는 墓地

3.宗中·門中墓地: 宗中 또는 門中 구성원의 墓를 동일한 區域안에 設置하는 墓地

4.法人墓地: 法人이 不特定 多數人の 墓를 동일한 區域안에 設置하는 墓地

②個人墓地를 設置한 者는 墓地를 設置한 후 30日 이내에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墓地를 관할하는 市長·郡守·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. 申告한 사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③家族墓地, 宗中·門中墓地 또는 法人墓地를 設置·관리하고자 하는 者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墓地를 관할하는 市長·郡守·區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. 許可받은 사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④市長·郡守·區廳長은 墓地의 設置·관리를 그 目的으로 民法에 의하여 設立된 財團法人에 한하여 法人墓地의 設置·관리를 許可할 수 있다.